

4. 住 宅 建 設 基 準 等 에 관 한 規 程 改 正 令 (案)立法豫告

建設交通部 公告 第1996-41號 1996. 2. 17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여건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유치원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주거지역과 취락지구의 공해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공해공장은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의 경우에는 1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은 1동의 길이를 120미터 이

내로 건설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전문인 설계자 및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이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함.

다. 주택내부마감재료의 최소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정하였던 것을 기호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내부 마감재료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주체나 입주민의 자율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함.

라. 주택단지내 주차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1세대 1대 수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단지내 여유공지의 잠식을 막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확대함.

마.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난방등 온수사용량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적산열량계를 의

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던 것을 온수사 용량만을 측정하는 유량계와 열량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3월 9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0-4122, 참조 주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